교원 인사규정 시행 세칙

제정 2002. 10. 1
개정 2003. 9. 1
개정 2009. 3. 25
개정 2010. 9. 1
개정 2012. 3. 1
개정 2012. 9. 1
개정 2014. 1. 1
개정 2021. 3. 22

제1장 승진임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교원의 승진요건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 승진임용에 관하여 정관 기타 본교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청구자격) ①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교원이 청구할 수 있다.

1. 동일 직위에서의 최저 승진 소요 연수를 충족시킨 교원 중에 교원 업적평가를 2회 이상 받은 교원. 단, 실처장 보직수행으로 인한 경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현재 직위 임용기간동안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교원

가. 삭제

나.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 현재 직위 임용기간 중 최근 6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 누적평균 결과가 750점 이상인 교원

다.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 현재 직위 임용기간 중 최근 6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 누적평균 결과가 800점 이상인 교원

② 현재 직위 임용기간동안 대학 혹은 학과발전에 대한 기여가 현저하나, 해당 교원 업적 평가 누적평균점수가 미달할 경우, 총장은 해당교원에게 승진청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승진절차) ① 제3조의 조건을 충족한 승진임용 대상교원은 승진심사청구서(서식 1)를 교학처를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진심사 청구가 없는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

② 승진임용 대상교원이 소속한 전공의 교수는 승진임용 대상교원의 현재 직위 임용기간동안의 업적에 대한 추천서를, 실처장 보직교수 및 스쿨원장은 임용기간동안의 업적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교학처를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대상교원이 제출한 승진심사청구서와 스쿨전공교수 추천서, 실처장 및 스쿨원장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임용심의는 별도 지침에 의해 실시한다.

④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정년보장교원의 경우, 동의결과)에 따라 추천받은 대상자 중 최종 승진임용대상교원의 승진을 이사회에 제청한다.

⑤ 총장이 승진대상 교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심의결과 접수 후 7일내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7일내에 해당교원에 대한 승진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해야한다.

⑥ 총장은 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승진심사 청구는 대상 교원 당 연1회로 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달리할 수 있다.

제5조 (이의신청) 삭제

제2장 재임용, 재계약

제6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교원의 재임용, 재계약 심사기준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적용범위) 교원 재임용, 재계약 심사기준에 관하여 정관 기타 본교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8조(심사대상) 조교수 이상의 일반직 교수으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 재계약의 심사대상이 된다. 단, 전담직 교수의 재임용은 전담직 교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9조(심사기구) 교원 재임용, 재계약 심사기구는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재임용, 재계약 심사자료) 교원 재임용, 재계약 심사자료는 교원업적평가 결과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심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단, 기타 심의자료는 상호 합의하여 임용계약서에 기록 한 것에 한한다.

제11조(재임용, 재계약 심사기준) ① 재임용, 재계약 기준은 임용기간 중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평균 650점/1,000점(총장부여점수 제외) 이상으로 하며 미달될 경우 재임용,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대학 혹은 학과발전에 기여가 현저하여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장 전담직 교수 전환

제13조(목적)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6조⑨에 명기된 일반직 교수의 전담직 교수로 전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대상) ① 일반직 전임교수 중 재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5조(심사기구) 전담직 교수 전환 심의기구는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전환 대상 기준) ①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는 재임용자의 임용기간 중 교원업적평가 개인영역평가 평균 62.5점(100점 만점 기준) 미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환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서면제출이나 교원인사위원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환직 교수 전환은 임용기간 교원업적평가 결과(30%) 스쿨원장평가(20%), 실처장 보직교수 평가(30%)(서식3), 교원인사위원회 평가(20%)(서식4)를 종합하여 60점(100점 만점) 미만인 자로 한다(평정표 서식5).

③①과 ②항과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에 의해 전담직 교수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자의에 의한 전담직 교수 전환 신청은 임용기간 중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임용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의에 의해 전담직 교수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청서(서식 6)를 작성하여 교원인사 담당부서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7조(처우) ① <삭제>

②전담직 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일반직 교수가 전담직 교수로 전환된 경우, 전담직 교수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며 일반직 교수로 복귀 시 승진임용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전담직 교수 임용기간은 승진임용 소요연수에 포함된다.

④전담직 교수의 처우 등은 전담직 교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8조(전담직 교수 재임용 및 일반직 교수로의 전환) ① <삭제>

② 전담직 교수의 재임용, 재계약, 일반직 전환은 전담직 교수 운영 규정에 의한다.

③ <삭제>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의 조교수 승진임용 심사 청구자격 점수는 2011년 4월 1일자 승진임용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시행일) 이 규정의 재임용·재계약 심사기준은 2011년 3월 1일자 재임용 대상자 심의부터 적용한다.

③(시행일)일반직 교수의 전담직 교수 전환 심의는 2010년 9월 1일 현재 임용기간이 50% 이상 남은 자의 재임용 심의 도래시 실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①항 1호의 사항은 이전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